

경남도 서부청사 민원처리 안내

(서부권개발본부 서부청사운영과 ☎ 055-211-605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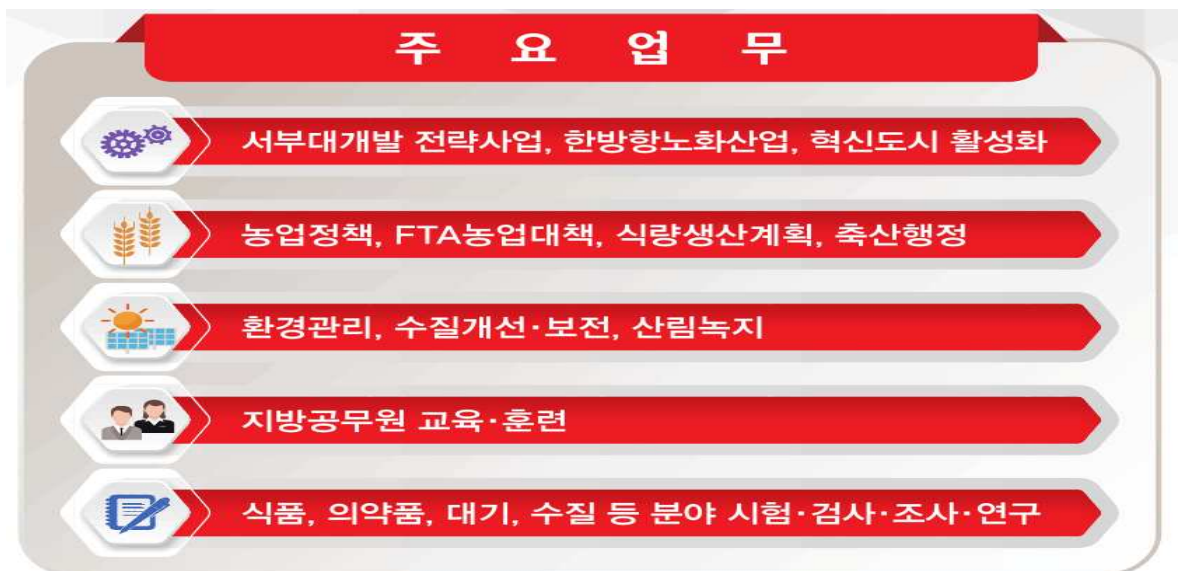
경남도 서부청사가 2015년 12월 17일 개청되어 서부권개발본부, 농정국, 환경산림국, 인재개발원,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민원은 서부청사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서부청사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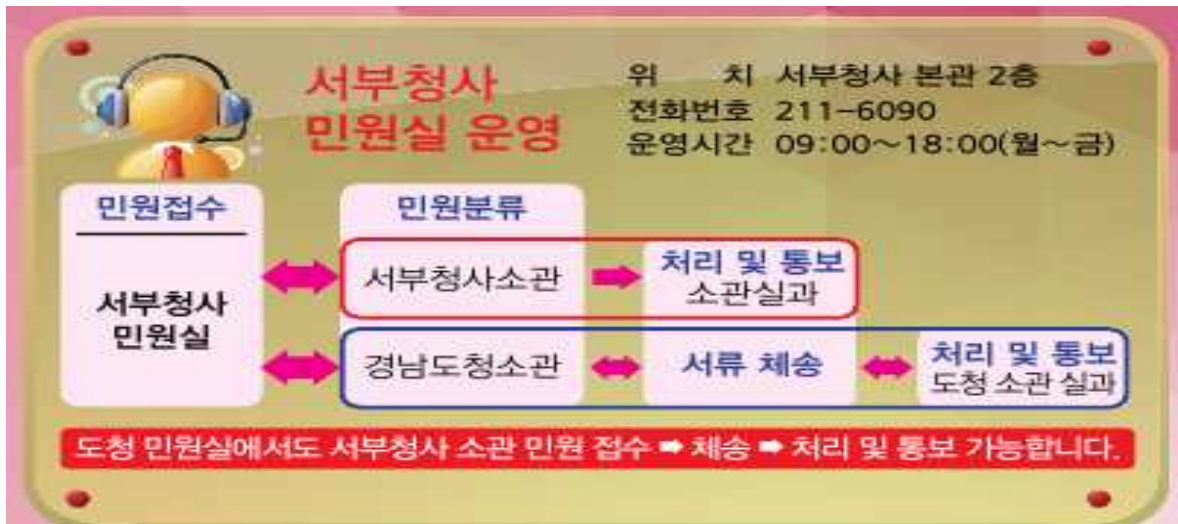
- 청사소재지 :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
- 조직도 및 전화번호



□ 주요업무



□ 서부청사 민원실 운영



민원사무 및 담당부서

※민원명은 가나다순임

소관청사	민원사무명	담당부서	대표번호
서부청사	농지전용 /농업기반시설	농업정책과	211-6231/6251
	대기배출시설	환경정책과	211-6641
	먹는생물, 정수기제조	수질관리과	211-6711
	보건분야 시험·검사	보건환경연구원	211-2241
	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	해당부서	
	사료성분 등록 및 등록증 교부	축산과	211-6531
	산림사업 법인 및 산림기술자	산림복지과	211-6821
	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	산림복지과	211-6851
	축산 사료	축산과	211-6531
	폐수배출시설	수질관리과	211-6721
	환경분쟁 / 환경컨설팅	환경정책과	211-6621/6611
	환경분야 시험·검사	보건환경연구원	211-2311
경남도청	간호조무사자격증 교부 및 마약류 양도승인	식품의약과	211-5041
	감리전문회사 및 건설업	건설지원과	211-2921
	건축사 및 주택관리사	건축과	211-4311
	과학관	기계융합산업과	211-3221
	국제물류주선업 및 항계내 공사 선박수리	항만물류과	211-4121
	기부금품 모집	세정과	211-3731
	노동 및 협동조합 설립	기업지원단	211-3351
	문화재수리업 및 전통사찰	문화예술과	211-4551
	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	해당부서	
	신문, 인터넷신문, 잡지사업	공보관	211-2061
	아동보호기관 및 보육시설	여성가족정책관	211-2261
	안전진단	안전정책과	211-2731
	어업허가	어업진흥과	211-4051
	어장정화 정비업	해양수산과	211-3931
	여객자동차(시의, 공항버스)	교통정책과	211-4371
	여권, 자격증재교부(간호조무사, 공인중개사 등)	대민봉사과(민원실)	211-3621
	요양보호사 및 장례지도사 자격증 교부	복지노인정책과	211-4841
	전기공사업 및 설계·감리, 태양광 발전 허가	경제정책과	211-3441
	정보통신공사업	정보통계담당관	211-2641
	지적·일반·공공측량업 및 등록사항 변경	토지정보과	211-4431

「정부3.0 안심상속」 원스톱서비스 안내

(자료제공 : 행정국 행정과 ☎ 055-211-3527)

□ 「정부3.0 안심상속」 원스톱서비스란?

-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, 토지, 자동차,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,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·온라인·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.

□ 서비스 내용

구분	시행내용	비고
접수처	• (전국 어디서나) 시·구, 읍·면·동	
신청자격	• 제1순위 상속인 • 제2순위 상속인 • 제3순위 상속인 • 대습 상속인 • 실종선고자의 상속인	
조회항목	• 금융재산(예금·대출·보험·상조회·기입 유무) • 지방세(체납·결손·고지세액·환급세액) • 자동차(소유내역)	• 국세(체납·고지세액·환급세액) • 토지(소유내역) • 국민연금(가입유무)
접수·이송 처리	• (접수·이송)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화	

□ 신청방법

-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: 전국 시·구, 읍·면·동
-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: 전국 전국 시·구, 읍·면·동 / 단,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

□ 문의처

- 금융거래[금융감독원 ☎1332(2번)] 국세[국세청 ☎126)] 국민연금[국민연금공단 ☎1355] 토지·자동차·지방세는 가까운 시·구청 부서[지적과·교통행정과·세무과]에 문의

「정부 3.0 행복 출산」 원스톱 서비스 시행('16.3.31)

(자료제공 : 행정국 행정과 ☎ 055-211-3533)

- 16. 3. 31.부터 한 번 방문으로 양육수당 등 출산관련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.

「정부 3.0 행복 출산」 원스톱 서비스란?

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(보육료 지원), 출산지원금, 다둥이카드 등 출산관련 수혜적 서비스 신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,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.

□ 접수처 : 읍·면·동 주민센터(출생자 주소지)

□ 신청방법 : 출생신고 후 통합신청서 작성하여 제출

○ 구비서류 : 신분증, 통장사본, 전기·도시가스·난방 요금고지서(다자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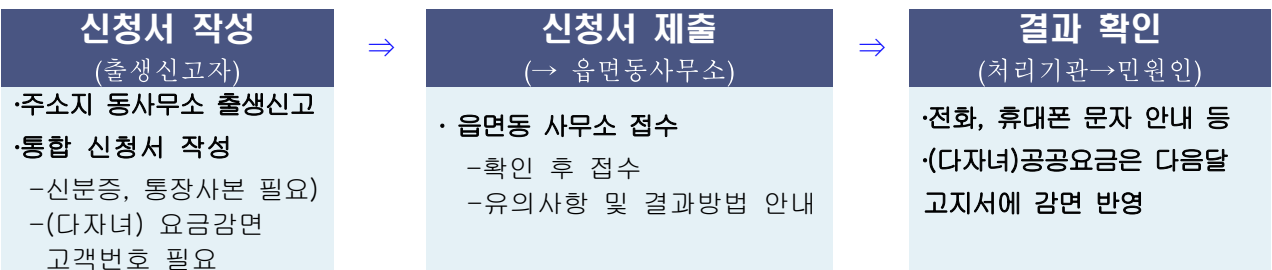
□ 서비스 내용

현 행 *신청서 여러 장 작성		개 선 *신청서 한 장 작성	
전국 공통 서비스	◦가정양육수당신청	⇒	읍면동 주민센터
	◦(다자녀)도시가스요금 경감	⇒	한전 지정
	◦(다자녀)전기료 경감	⇒	도시가스회사
	◦(다자녀)난방료 경감	⇒	난방공사(양산)
시군 자체 서비스	◦출산장려금, 셋째아 양육수당, 출산축하용품, 모유유축기 대여 등 시군별 1~6종	⇒	읍면동 주민센터, 보건소

**읍면동 주민센터에서
출생신고 시 1번의 통합신청**

- 수혜 누락방지
- 빠른 수혜
- 시간 및 비용 절감
- 구비서류 최소화

□ 처리절차



□ 문 의 : 시군별 안내

미세먼지, 이렇게 대비하세요

(자료제공 :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☎ 055-211-6643)

□ 미세먼지란?

-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우리의 폐 속 폐포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,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고 특히 어린이, 노약자,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로운 물질입니다.

□ 미세먼지 농도 확인 방법

- 에어코리아 홈페이지(www.airkorea.or.kr)나 어플리케이션 ‘우리동네 대기질’에서 미세먼지 농도 확인 가능합니다.

□ 미세먼지 예보제

-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‘좋음, 보통, 나쁨, 매우나쁨’의 네 단계로 구분합니다. 환경부(국립환경과학원)에서는 하루 4회(오전 5시·11시, 오후 5시·11시), 전국 18개 권역의 미세먼지 예보등급과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도민행동 요령을 예보하고 있습니다.

< 미세먼지 예보내용 >

예보내용		등급($\mu\text{g}/\text{m}^3$)			
		좋음	보통	나쁨	매우나쁨
예보물질	미세먼지 (PM-10)	0~30	31~80	81~150	151 이상
	미세먼지 (PM-2.5)	0~15	16~50	51~100	101 이상
행동요령	민감군	-	·실외 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	·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·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	·가급적 실내 활동,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
	일반인	-	-	·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·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,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	·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·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

※ 민감군 : 어린이, 노인,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

□ 미세먼지 경보제

- 경상남도(보건환경연구원)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경보(주의보, 경보)를 발령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조치를 합니다.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이렇게 행동하세요.

<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도민행동요령 >

미세먼지 주의보

- 민감군(어린이 · 노인 ·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)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
-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(특히, 눈이 아프거나,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)
- 부득이 외출 시 황사(보호)마스크 착용(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)
-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
- 유치원 · 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
-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
- 공원 · 체육시설 · 고궁 · 터미널 ·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

미세먼지 경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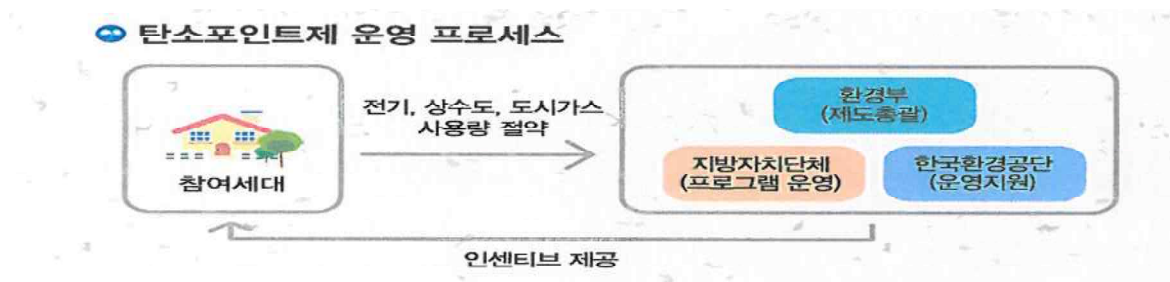
- 민감군(어린이 · 노인 ·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)은 실외활동 금지 (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)
-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(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)
- 부득이 외출 시 황사(보호)마스크 착용
-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
- 유치원 · 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, 수업단축 또는 휴교
- 중 · 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
-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
- 공원 · 체육시설 · 고궁 · 터미널 ·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

탄소포인트제 가입 안내

(자료제공 :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☎ 055-211-6635)

□ 탄소포인트제란?

- 가정, 상업,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



□ 탄소포인트 부여

- 과거 2년간 월별평균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, 절감율에 따라 포인트 부여

	전기	수도	가스
5~10% 미만 절감	10,000P	1,500P	6,000P
10% 이상 절감	20,000P	3,000P	12,000P

□ 참여대상

- 개인 : 가정의 세대주(세대 구성원) 또는 학교, 상업 시설의 실제 사용자
- 아파트단지 :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, 일반건물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건물관리자

□ 인센티브 지급방법

- 개인 : 연2회 지급 / 가입시 선택한 현금, 상품권 등으로 반기별 인센티브 지급
- 아파트단지 : 연 1회 지급

□ 참여방법

- 인터넷신청 (cpoint.or.kr) 또는 관할 시·군·구 담당 우편, 팩스, 방문접수

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.

(자료제공 : 소방본부 예방대응과 ☎ 055-211-5366)

주택용 소방시설 이란?

- 주택용 소방시설 :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
- 설치대상 : 2012년 2월 4일 이전에 지어진 단독주택, 공동주택
 - [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] [연립주택, 다세대주택] (*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)
- 설치기준
 - 소화기 : 세대별, 층별 1대 이상
 - 단독경보형 감지기 : 주방, 거실, 방 등 구획된 실 마다 1개
 - * 단독경보형 감지기(건전지로 작동) - 연기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
- 구입방법 :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

관련 법령 내용

-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
-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
 - 신축, 증축 등 주택은 건축 허가·신고 시 설치 확인 (12.02.05부터 적용)
 -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



소화기 3.3Kg (약 2만원)



단독경보형 감지기 (약 1만원)

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 포상금제 운영 안내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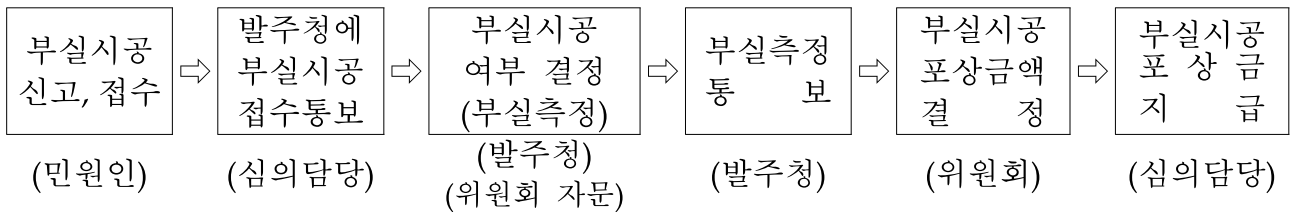
(자료제공 : 재난안전건설본부 건설지원과 ☎ 055-211-2925)

“도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 및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”

부실시공 신고대상

- 경상남도(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)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설립한 공사·공단이 발주한 도금액 50억이상 건설공사
- ※ 대상공사 : 건설정보(gnci.gsnd.net) 홈페이지에 게재

처리절차



포상금 지급기준

부실시공 등급	부실별점	주요내용	포상금 지급기준
1 등급	별점 3점	설계도서와 다르게 기초굴착 등으로 토사붕괴, 주요구조부 균열 및 재료분리	500만원 이하
2 등급	별점 2점	주요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·보강이 필요한 경우	300만원 이하
3 등급	별점 1점	기초굴착 소홀로 인한 토사붕괴, 기타구조부 균열 및 재료분리	100만원 이하
해당없음	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로 시정이 가능한 경우 및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		없음

신고방법(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함)

- 전화신고 후 관련서류 송부(우편 또는 방문신고) : 055-211-2922~6
- 팩스를 이용한 신고 : 055-211-2919
- 신고서식 : 상기 홈페이지에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

2016년 국가 안전대진단 실시!

생활 속 안전위해 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

(자료제공 : 재난건설안전본부 안전정책과 ☎ 055-211-2735)

국가 안전대진단이란?

- 추진기간 : 2016. 2. 15 ~ 4. 30(75일)
- 추진목적 : 생활주변 주요시설에 대해 안전진단을 통하여 안전 위험시설·사각지대 해소를 사회 안전망 확보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
- 추진배경 : 시설물 노후화·고층화·대형화로 인한 위험요인 증가,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 지속 증가, 안전사각지대에서 안전사고 발생 등 계속되는 대형 안전사고 위협 상존
- 진단대상 :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 주변 주요시설 전반 및 안전을 위협하는 법·제도·관행
- 진단방법 : 시설물 관리주체 자체점검 및 민관합동점검
- 참여협조 : ‘안전신문고’ 웹(www.safepeople.go.kr)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안전신고 또는 제안

안전신문고(www.safepeople.go.kr)란?

- 안전신문고 :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안전위협 요소를 제보할 수 있는 안전신고 포털(사이트)로 웹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 가능
- 신고대상 및 처리절차
 - 신고대상
 - 취 약 시 설 : 절개지, 노후 옹벽·축대, 가건물 등 위험지구 및 건축물
 - 다중이용시설 : 대중교통(전철·버스·철도·선박), 유원시설 등
 - 공 공 시 설 : 댐, 저수지, 상·하수설비, 가스·전기시설 등의 위협요소
 - 기타 생활환경 : 학교폭력, 학교주변 유해업소, 불량식품 등
 - 처리절차
 - 제보방법 : 검색창에서 ‘안전신문고’ 검색 또는 www.safepeople.go.kr 입력 후 안전신문고로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
 - 제보사항 처리 : 신고처리기관(중앙부처, 도, 시군 등)
 - 결과통보 :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(이메일, 문자)

함께하는 안전점검! 함께가는 안전강국!

2016 국가안전대진단

2016년 2월 15일 ~ 4월 30일

민관합동 점검

함께 참여하는 안전신고

진단 주체 중앙부처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
(민간전문가 참여)

점검 대상 안전사각지대, 위험시설,
안전신고 대상 등

점검 방법 민관합동점검,
국민은 안전신문고 웹(www.safepeople.go.kr)
또는 앱을 통해 참여

3월은 부정군수품 집중 계몽·홍보·단속의 달입니다.

부정군수품은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!

1. 부정군수품이란 무엇인가요?

- 부정유출 및 불법유통되는 한·미군 군수품 일체, 불법 제조·판매되는 군복류 및 군용장구, 사제 군복류

2. 단속대상(형사처벌) 품목은 무엇인가요?

- 총기, 탄약, 폭발물, 군용차량/장비, 군용식량, 유류 및 부속품, 기타 군용물품
- (유사)군복류 : 전투복, 전투화, 계급장, 야전상의, 방한복, 비행복, 특전복 등
- 군용장구류 : 권총집, 구급대, 탄입대, 요대, 방탄헬멧, 반합, 수통, 모포 등

3. 단속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?

- 총기, 탄약, 폭발물 관련 범죄 :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- 군용차량, 장구류, 식량, 피복 등 군용물 범죄 :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
- (유사)군복/군용장구 불법제조·판매 : 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
- (유사)군복 및 군용장구 불법착용·사용 : 10만원 이하 벌금, 구류, 과료

4. 자진 신고 / 반납하면 어떻게 되나요?

- 부정군수품 소지·보관자가 자진 신고 / 반납한 경우, 가능한 선처 조치

5.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?

- 가까운 헌병대, 경찰관서
 - 5부합동 부정군수품단속 진해지구위원회 : 055)549-4972
국방부 부정군수품 단속위원회 : 02-748-1882, 1885~7
 - 국방헬프콜 : 국번없이 1303번
 - 국방부조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mndcic.mil.kr>) 「신고 및 제보」 클릭!
- ※ 신고자는 심의 후 신고 보상금 지급 / 신고자 신원 비밀 보장

군용물품, (유사)군복류, 군용장구를 불법반출·제조·판매·착용(휴대)하는 것은 범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!

5부합동 부정군수품단속 진해지구위원회